

의안번호	2220164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3.
추계번호	26A3775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2조의14 신설 (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(이하 “도약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신사업·신시장 진출 전략 수립, 경영·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－ 2. 사업화, 마케팅, 해외진출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－ 3. 출연, 보조, 융자나 보증 등 금융지원 － 4.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－ 5. 특허,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－ 6.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○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약기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함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규모,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약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모별로 선정 요건 및 도약지원사업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제3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도약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도약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음(제4항) ○ 제1항에 따른 도약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·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절차, 제3항에 따른 규모별 지원내용, 제4항에 따른 신청서의 발급 및 그 밖에 도약기업의 선정과 도약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재량·의무 규정
2	안 제62조의16 신설 (도약기업 실태조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약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약기업 또는 도약기업과 관련된 기업·기관·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2항)	재량·의무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○ 그 밖에 도약기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2조의14 신설(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)	·미대상 -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 시행하고 있는 「도약(Jump-Up) 프로그램」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참고로,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역량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, 전략이행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「도약(Jump-Up) 프로그램」 사업을 추진 중이며, 2027년에는 기 운영하던 ‘점프업 500’에 전·후 단계인 ‘점프업 100’과 ‘점프업 1,000’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·개편한다는 계획으로,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1,642억 4,700만원이 편성됨
2	안 제62조의16 신설(도약기업 실태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약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“도약기업”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·신시장 진출 등 사업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하여 성장하려는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함¹⁾

1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도약기업”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·신시장 진출 등 사업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하여 성장하려는 소기업 및 중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하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함)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도약기업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도약기업 실태조사의 주기, 대상, 방법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약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도약기업 실태조사의 시기·주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며,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도약기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계하기 어려움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